

중앙대 청년 연금간담회

# 기초연금 논란의 본질과 청년세대

2014년 3월 19일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국민연금, 얼마나 받고 있고 얼마나 받을 것인가?

## 공무원/사학연금과 비교

	국민연금(2011년 말)			공무원연금 (2010)	사학연금 (2010)
	완전 노령연금 (20년 이상 가입)	감액 노령연금 (10년-19년 가입)	특례 노령연금 (5-9년 가입)		
연금 수급자	82,436명	527,273명	1,627,140명	311,429명	37,381명
1인당 연금액	645,435원	371,678원	188,422원	2,430,000원	2,737,500원
사학연금 =100	23.6%	13.6%	6.9%	88.8%	100.0%

# 국민연금은 점차적으로 삭감된다!

- §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액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짐 (2028년부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60%에서 40%로 낮아짐).
- §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소위 A값)에 가까운 186만원 계층이 2011년부터 신규 가입하여 25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연금액은 50만원으로 이는 2011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3만원보다 적음. 최고소득층인 375만원 계층이 30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받는 연금액이 89만원으로 '11년 2인 가구 최저생계비 91만원보다 낮음.

<표 3> 소득계층별 국민연금 예상액 (201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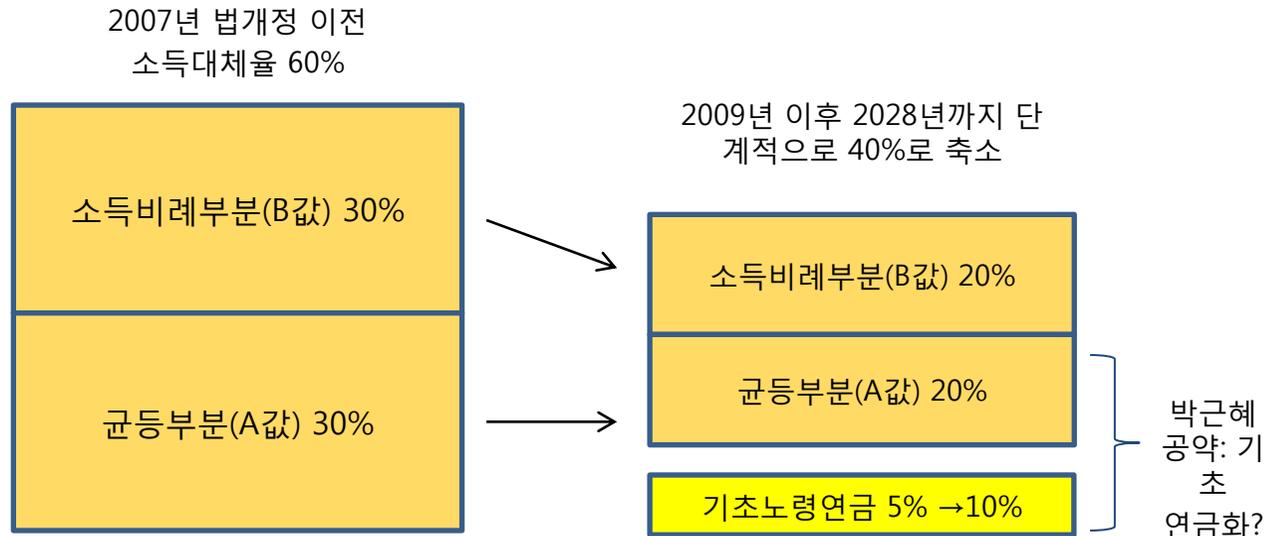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	2011년 신규 가입 이후 가입기간		
	20년 가입	25년 가입	30년 가입
375 만원	61 만원	75 만원	89 만원
186 만원	40 만원	50 만원	59 만원
92 만원	30 만원	37 만원	44 만원
23 만원	23 만원	23 만원	23 만원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2012.08)

# 2007년 국민연금 삭감과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 2007년에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급여수준을 60%에서 40%로 낮추는 **세계 연금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연금액 인하**가 이루어졌음.

§ 국민연금이 너무 삭감되어 이를 보충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이 새로 도입되었고 2028년까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10%까지 인상되도록 법에 규정되었음.



§ 2007년의 연금개혁을 정당화한 논리는 세 가지이나 이 발표에서 주장하듯이 잘못된 논리임.

- ü 논리1: 연금액을 낮추거나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2047년에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고 기금고갈 시 경제, 사회적 후유증이 크다.
- ü 논리2: 기금고갈 시 노인들의 연금을 부담하기 위한 후세대의 부담이 커진다.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 세대가 연금을 덜 받는 양보를 해야 한다.
- ü 논리3: 국민연금의 급여액이 깎여도 퇴직연금이나 민간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충할 수 있다.

# 기초연금액은 왜 20만원인가? ‘소득대체율’

§ 기초노령연금은 왜 10만원 인가?

-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 (약 400만명)에게 9만 7천원의 연금을 지급함(9만 7천원을 편의상 10만원이라 부르는 것임). 이 금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2천만명 중 소득을 신고한 약 1천 3백만명의 소득의 평균액(소위 A값, 2013년 기준 약 198만원이나 편의상 2백만원이라 함)의 5%임. 기초노령연금이 시작된 2008년에 관련 법에 A값의 5%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기초노령연금액(2013년 기준) : 200만원(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 X 0.05 = 1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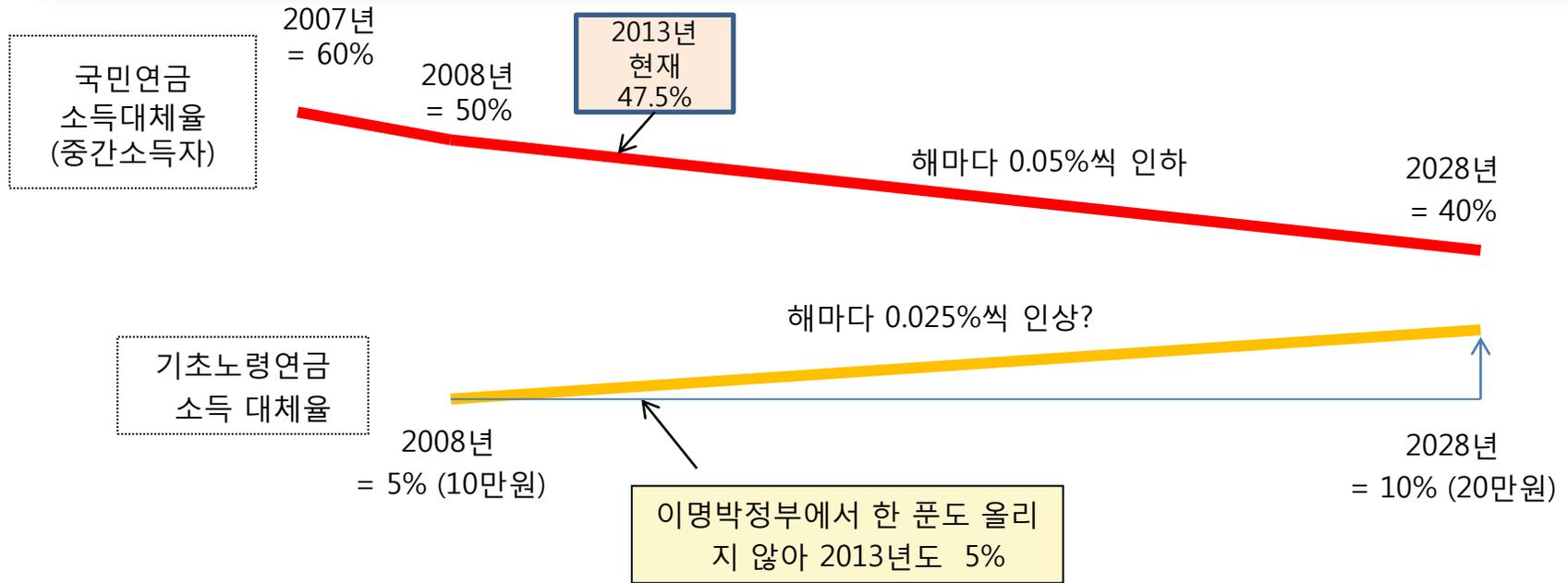
§ 박근혜 대통령은 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는가?

-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는 2028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A값)의 1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2028년에 지급하기로 된 기초연금액 20만원(A값의 10%)를 14년 앞당겨 2014년부터 지급하겠다는 것임.

- 기초연금액 (2014년 기준) : 200만원(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X 0.1 = 20만원

§ 연금액이 가입자 전체 혹은 자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소득대체율’이라 함. 가령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200만원이고 기초연금액이 20만원이면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만원÷200만원 = 10%가 됨.

# 기초노령연금은 낮은 국민연금을 보충하는 것이다



§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액이 단계적으로 낮아져 노후소득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A값의 5%에서 시작하여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A값의 10%로 인상한다는 계획하에 도입된 것임. 즉 기초연금이 도입된 것은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연금을 보완하여 노후에 빈곤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임.

# 누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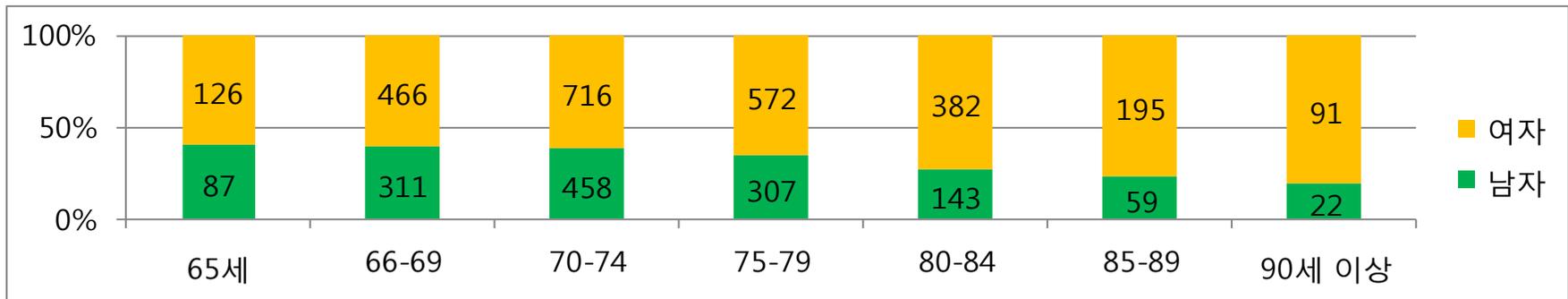
§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며 이 중 대부분의 노인이 월 9.7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음.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노인의 받는 비율이 매우 높음(이런 의미에서 기초노령연금은 여성노인의 빈곤방지에 도움이 됨)

기초노령연금액별 수급자 비율(2012년 말)

계	2만원	4만원	6만원	7.6만원	8만원	9.5만원
3,933,095 (명)	13,409	17,110	21,499	1,491,234	8,187	2,381,656
비율	0.4	0.4	0.5	37.6	0.2	60.9

자료: 보건복지부(2013), 『통계로 본 2012년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의 성별 수급자 현황 (2012) (단위, 천명)



자료: 보건복지부(2013), 『통계로 본 2012년 기초노령연금』, p.20

# 박근혜정부 기초연금 도입(안)의 개요와 논란의 지점

## 정부인수위원회(안)

- 국민연금 미수급 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하는 4만원. 10년 이상은 1년당 2천원 추가(20년이면 6만원)
- 기본적으로 4만원-6만원이 지급됨

## 소득상위 30% 노인(가구)

- 국민연금 미수급(D)  
(약 100만명)
- 국민연금 수급 (C)  
(80만명)

## 박근혜정부(안)

- 지급하지 않음

쟁점 1

## 소득하위 70% 노인(가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초노령연금 10만원에 추가 4만원 지급. 10년 초과 1년당 2천원씩 추가. 20년 가입 16만원, 30년 가입 18만원(부부 동시 수급은 20% 감액)

- 국민연금 수급자(B)  
(약 102만명)
- 국민연금 미수급(A)  
(약 291만명)

- 국민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감액지급(최저 10만원, 최고 20만원)  
- 즉,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반비례하여 기초연금을 삭감함

쟁점 2

- 1인당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부부노인의 경우는 20% 감액하여 32만원 지급).

- 1인당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 쟁점 1 : 왜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하위 70% 노인만 주냐(공약 파기?)  
 § 쟁점 2 : 국민연금에 오래 성실하게 가입한 사람이 왜 기초연금을 덜 받나(국민연금 가입자 차별)?

# 참고: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된 기초연금 산정공식

$$(20\text{만원} - 2/3A) + 10\text{만원}$$

• 기초연금액이 결정되는 부분: A는 각 개인의 국민연금액에서 '균등부분'이 차지하는 금액을 의미

• 소득하위 70%에 속한 노인에게는 국민연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

균등부분 계산법 (2028년 이후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경우)

고소득자(갑)  
A값 = 200만원  
B값 = 400만원

• 국민연금액 계산:  $1.2(200+400)(1+0.05 \times 0\text{년})/12\text{개월} = 60\text{만원}$   
- 여기서 '갑'의 B값(소득비례부분)은 400만원으로 균등부분(A값) 200만원과 **2:1의 비중**임. 따라서 국민연금급여 60만원에서 소득비례부분과 균등부분의 비중을 환산하면, 60만원 중 균등부분(A값)은 20만원이고 나머지 40만원이 소득비례부분(B값)임

중간소득자(을)  
A값 = 200만원  
B값 = 400만원

• 국민연금액 계산:  $1.2(200\text{만원}+200\text{만원})(1+0.05 \times 0\text{년})/12\text{개월} = 40\text{만원}$   
- 여기서 '을'의 B값(소득비례부분)은 200만원으로 균등부분(A값)인 200만원과 **1:1의 비중**임. 따라서 국민연금 급여 40만원에서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의 비중(1:1)을 환산하면, 40만원 중 균등부분은 20만원이고, 나머지 20만원이 소득비례부분임.

저소득자(병)  
A값 = 200만원  
B값 = 400만원

• 국민연금액 계산:  $1.2(200\text{만원}+25\text{만원})(1+0.05 \times 0\text{년})/12\text{개월} = 22.5\text{만원}$   
- 여기서 '병'의 B값(소득비례부분)은 25만원으로 균등부분(A값)인 200만원과 대략 **1:9의 비중**임(11.1:88.9). 따라서 국민연금 급여 22.5만원에서 소득비례부분과 균등부분의 비중을 환산하면, 22.5만원 중 균등부분(A값)은 20만원이고, 나머지 2.5만원이 소득비례부분(B값)임.

# 참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액 예시

소득계층별 가입자의 균등부분(A값)의 비중과 기초노령연금액 예시 (단위: 만원, %)

- 오른쪽 표에서 보는 것처럼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5년까지는 기초연금액이 20만원이고 16년부터는 점차 감액되어 가입기간이 30년을 넘어가면 기초연금액은 10만원으로 고정됨.

- 즉,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삭감되어 장기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이번 기초연금(안)의 핵심적인 원리임.

- 따라서 국민연금에 장기가입하는 유인을 감소시켜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임.

소득구분	국민연금 가입연수	국민연금 급여액	A값(균등부분)의 비중	A값(균등부분)의 몫	기초연금액 산정
고소득자 '갑' B=400만원	10년	30	33.3%	10	$(20-2/3*10)+10=$ 23.3만원 → 20만원
	15년	45		15	$(20-2/3*15)+10=$ 20만원
	20년	60		20	$(20-2/3*20)+10=$ 16.7만원
	25년	75		25	$(20-2/3*25)+10=$ 13.3만원
	30년	90		30	$(20-2/3*30)+10=$ 10만원
	40년	120		40	$(20-2/3*40)+10=$ 10만원
평균소득자 '을' B=200만원	10년	20	50.0%	10	$(20-2/3*10)+10=$ 23.3만원 → 20만원
	15년	30		15	$(20-2/3*15)+10=$ 20만원
	20년	40		20	$(20-2/3*20)+10=$ 16.7만원
	25년	50		25	$(20-2/3*25)+10=$ 13.3만원
	30년	60		30	$(20-2/3*30)+10=$ 10만원
	40년	80		40	$(20-2/3*40)+10=$ 10만원
저소득자 '병' B=25만원	10년	11.3	88.9%	10	$(20-2/3*10)+10=$ 23.3만원 → 20만원
	15년	16.9		15	$(20-2/3*15)+10=$ 20만원
	20년	22.5		20	$(20-2/3*20)+10=$ 16.7만원
	25년	약 28.1		25	$(20-2/3*25)+10=$ 13.3만원
	30년	약 33.8		30	$(20-2/3*30)+10=$ 10만원
	40년	45		40	$(20-2/3*40)+10=$ 10만원

\* A값의 비중 =  $A/(A+B)$ , A는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B는 가입자의 소득월액. (편의상 A값은 200만원으로 책정)

\*\* A값의 몫 = 국민연금 급여액 \* A값의 비중 (국민연금 급여에서 급여산식에 의거하여 A값이 차지하는 부분)

\*\*\*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초연금(수정)안의 산식에서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만원만 일괄 지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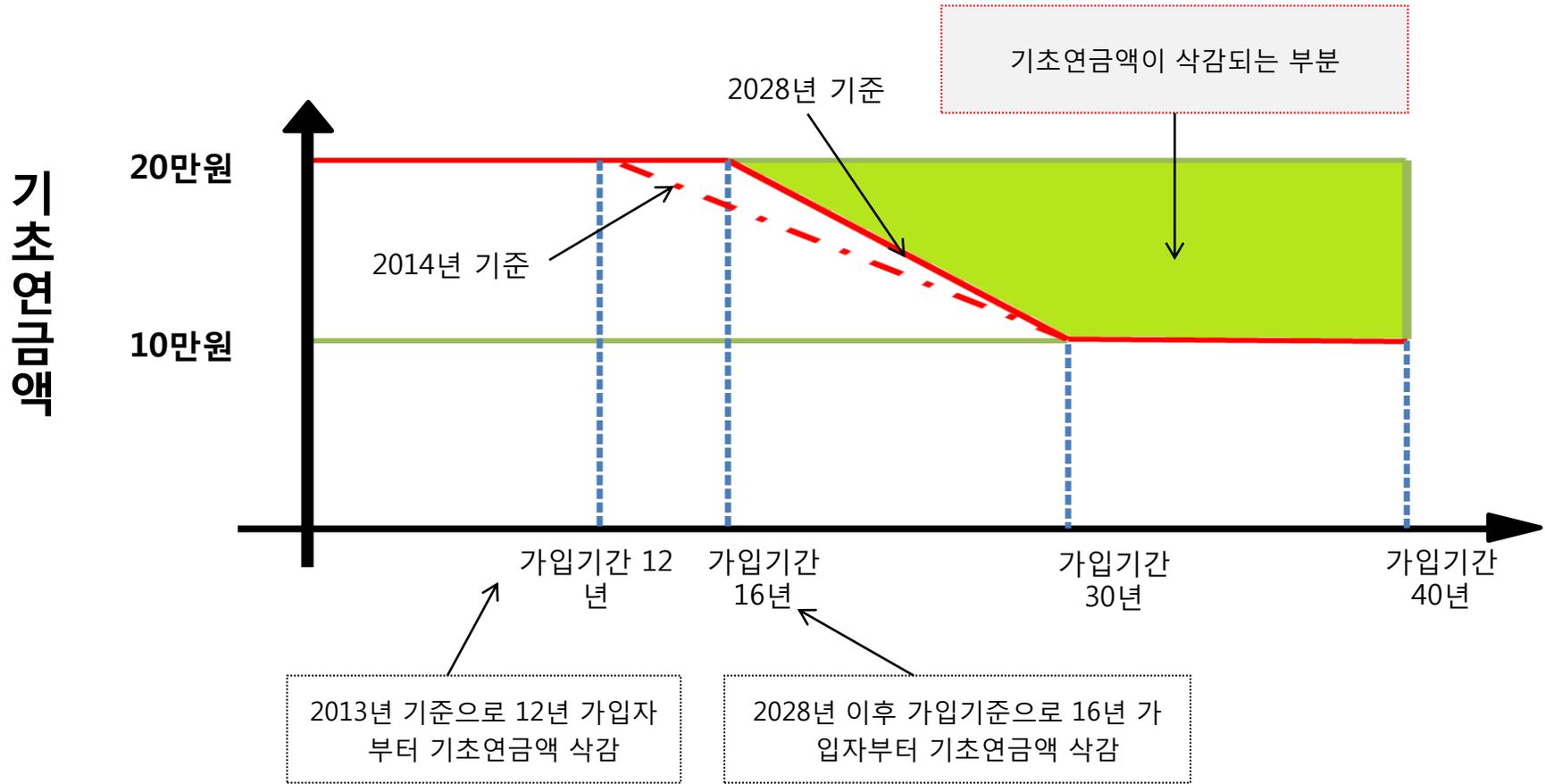
#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의 쟁점(1): 국민연금 가입기간 긴 젊은 세대의 기초연금이 삭감된다.

## 국민연금 산정 공식: $1.2 (A+B)(1+0.05n)/12$ 개월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200만원 (A=200만원), 가입기간 동안 본인의 평균소득 200만원(B=200만원), 국민연금 가입기간 25년, 국민연금액은 50만원임.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액 삭감 구간



# 현행제도와 정부안의 기초연금 삭감액의 예

(평균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가입기간	국민연금 수급액	현행 방식		박근혜 정부(안)	
		기초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기 초연금
2003년 이후 30년 가입	691,250	200,000	891,250	100,000	791,250
2013년 이후 20년 가입	423,110	200,000	623,110	161,220	584,330
2023년 이후 10년 가입	200,480	200,000	400,480	200,000	400,480

##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의 쟁점(2): 기초연금의 물가연동 or A값 연동?: 기초연금의 가치가 하락한다

$$\text{기초연금액} = (20\text{만원} - \frac{2}{3} \text{ A값 여}) + 10\text{만원}$$

'기준연금액'  
- 물가연동

조정계수  
- 정부가 정함

국민연금의  
균등부분

부가연금액  
- 정부가 정함

- § 물가연동은 기준연금액(20만원)과 부가연금액(10만원)을 물가상승율에 연동하여 실질가치를 유지하는 방법 (정부안)
- § A값 연동은 기준연금액과 부가연금액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증가율만큼 조정하는 방법(현행 제도)
- § A값 연동이 연금의 실질가치를 더 잘 유지함. 통상 소득상승율이 물가상승율보다 높기 때문임.
- '89년-2012년 기간동안 A값은 연평균 7.2%상승. 같은 기간 물가는 4.31%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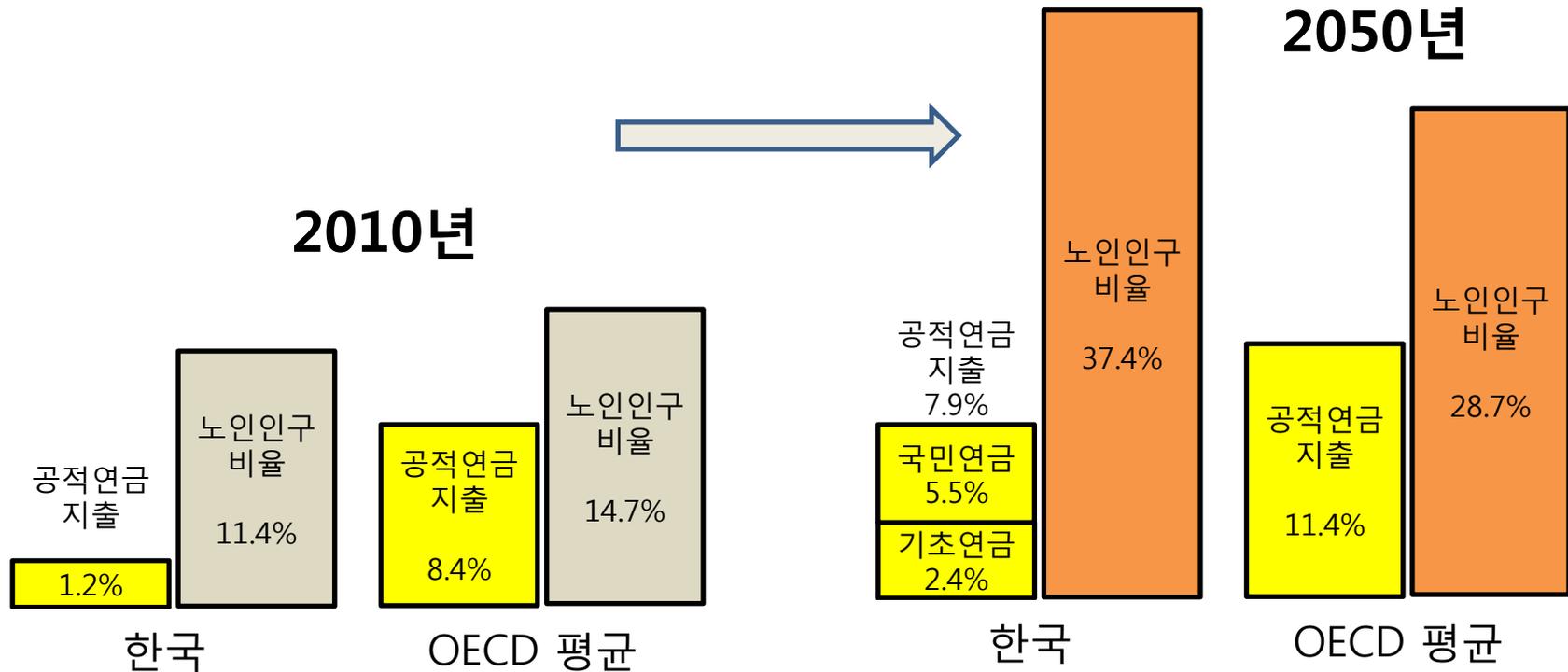
- § 정부안대로 물가연동을 하면 A값 연동보다 20만원의 실질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하락함.
- § 이렇게 되면 현재 20만원을 받는 노인도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하락하여 현세대 노인도 현행법보다 손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됨.
- 정부는 물가연동을 하되 5년마다 한번씩 A값 상승율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 조정하겠다고 함

# 임금연동과 물가연동방식에 따른 기초연금액 차이

기초연금 산정공식	2014년	2024년	2034년
<b>물가연동방식(정부안)</b> $(20\text{만원} - 2/3A) - 10\text{만원}$	20만원	26만 6천원	35만 5천원
<b>임금연동방식(현행제도)</b> $(0.1A - 2/3A) - 0.05A$	20만원	29만 4천원	43만 2천원
기초연금 감소액		- 2만 8천원	- 7만 7천원

##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의 쟁점(3): 기초연금의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 재정적으로 지속불가능하다?

§ 기초연금을 20만원씩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할 경우 2050년에 GDP의 2.4% 예상. 여기에 국민연금 예상 지출 GDP 5.5%를 더하면 2050년 총 7.9%의 연금 지출 예상. 2050년에 OECD 선진국의 공적연금 지출은 GDP의 11.4%로 예상. 따라서 충분히 지속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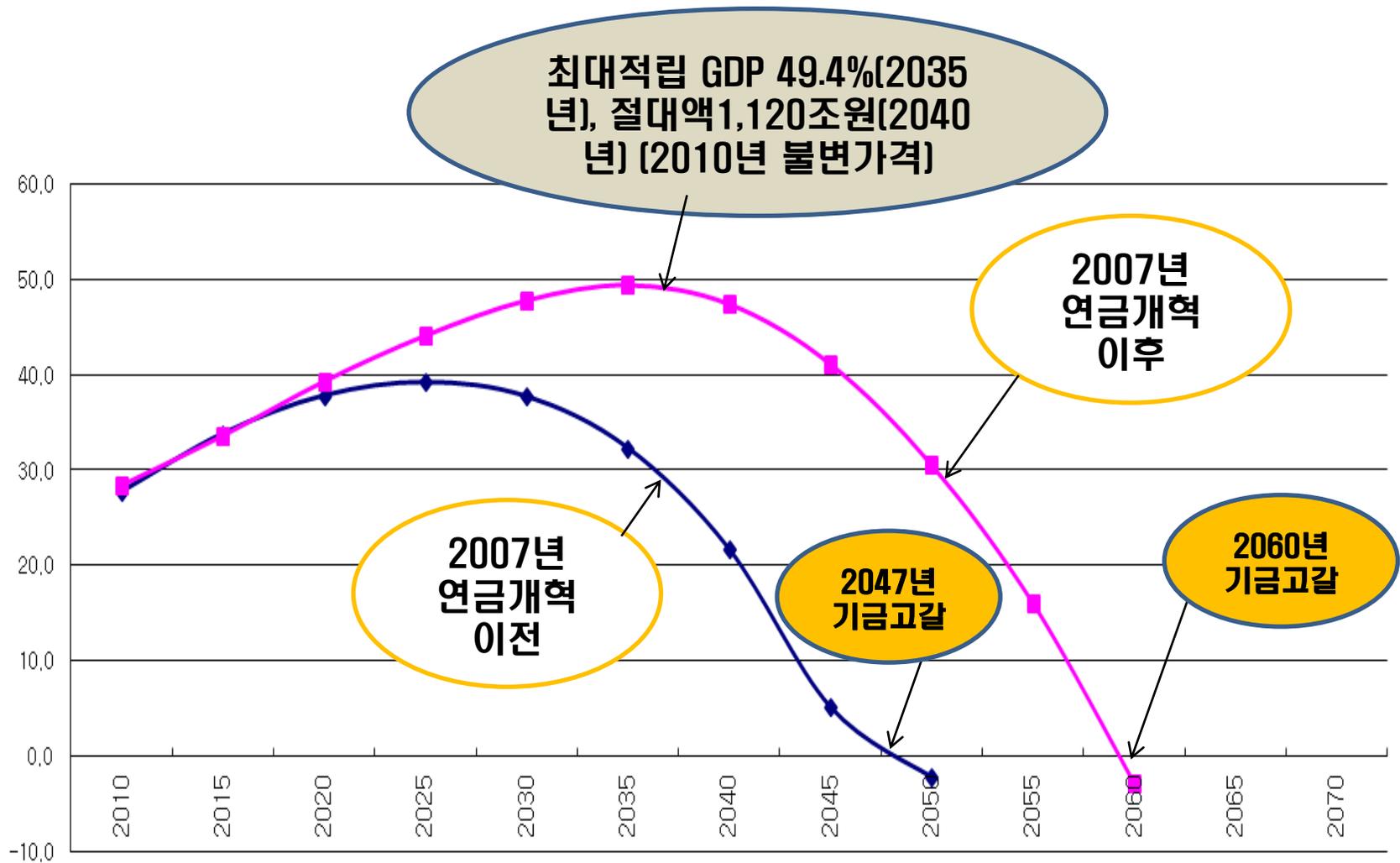
## 참고: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지출 규모

- §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들의 연금을 주기 위해 젊은세대는 소득의 상당부분을 보험료로 납부하여(22%) 경제적으로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 그러나 이는 '공포마케팅'이며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면 후세대의 노인부양부담은 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어 한국 노인들의 대량빈곤 문제가 지속될 것임.
- § 2012년에 GDP의 0.9%인 약 11조원을 지출한 국민연금은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50년에 GDP의 5.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기초노령연금액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A값의 10%로 인상하되(현재가치로 20만원), 지급 대상자를 현재의 70%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축소하면 ('선별적 기초연금안'), 2050년 GDP 대비율은 1.59%, 지급 대상자를 70%로 유지하면 2.4%,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면 4.3%의 지출이 예상됨. 만약 현재처럼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20만원씩 지급할 경우 국민연금의 지출을 합치면 2050년에 7.9%가 되며(국민연금 5.5%, 기초연금 2.4%), 전체 노인에게 지급할 경우 공적연금 지출액은 GDP의 9.8%가 됨.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으로 2050년의 경제활동인구가 부담해야 하는 돈의 규모를 넉넉하게 잡아도 7.9%- 최대 9.8%가 되는데 이 부담으로 인해 후세대는 파국을 맞을 것인가? 이는 다른 나라와 지출규모를 비교해 보면 매우 과장된 주장임을 알 수 있음.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지출액의 GDP 대비율 (단위: %)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지출비중	65세 이상 인구				지출비중	65세 이상인구	
국민연금(A)	0.9	11.0	1.4	2.5	3.9	5.5	37.4	6.5
기초연금 40% (B)	-		0.6	0.9	1.3	1.6		1.7
기초연금 70% (C)	0.3		0.9	1.6	2.1	2.4		2.8
기초연금 100%(D)	-		1.2	2.4	3.5	4.3		4.7
합계(A+C)	1.2		2.3	4.1	6.0	7.9		9.3
합계(A+D)	-		2.6	4.9	7.4	9.8		11.2

# 참고: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면 연금 못 받나?



## 참고: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면 연금 못 받나?

- §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으나 이 역시 오해임. 민간연금같은 사보험은 회사가 망하거나 기금이 고갈되면 지급이 불가능하고 연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많음. 그러나 공적연금은 민간회사들이 운영하는 사보험과는 운영원리가 근본적으로 다름.
- §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막대한 기금을 적립한 상태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일본, 미국, 한국, 스웨덴, 캐나다 등 5개국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금 없이 연금을 운영하고 있음. 즉, 노인들의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정을 연단위로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재정이 운영되고 있음(가령 연금지급이 10조원이 필요하면 10조원을 젊은 인구에게 걷어서 연금을 지급함). 때문에 연금지급의 주체인 해당 국가가 지구상에서 소멸되지 않는 이상 기금이 소진된다고 하여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음.
- § 문제는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에서 경제활동인구(후세대)가 노인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규모(연금보험료+조세)가 후세대가 감당 가능한 규모인지 아니면 감당이 불가능한 규모인지가 중요한 것임.
- § 앞에서 보았듯이 2060년에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고 가정할 경우 2050년 당시의 경제활동인구가 노인 부양을 위해 지급해야 되는 돈의 규모(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는 최소 7.8% - 최대 9.8% 수준이며, 이는 후세대가 부담이 불가능한 규모가 아님. 따라서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여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혹은 후세대가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보험료와 조세부담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알려진 매우 과장된 주장임.
- § 이런 의미에서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의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의 쟁점(4): 국민연금의 장기가입 유인을 약화시켜 노후불안을 가중시킨다

-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방식은 국민연금의 장기가입유인을 떨어트림. 특히 ① 자영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가입자와 ② 50세를 전후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로 편입해야 하는 사람들이 국민연금 가입유인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
- § 지역가입자는 844만명으로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41.6%를 차지함. 이들은 보험료를 원천 징수 당하는 직장인과는 달리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을 낮춰 신고 하거나 소득이 없다고 신고함으로써 국민연금에서 빠져나갈 공간이 상대적으로 큼. 지금도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예외자가 464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2.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유인을 떨어트리게 됨. 즉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커지거나 온존하게 됨.

총가입자			2,026만명
직장가입자			1,153 만명
지역 가입자 (844만명)	도시 지역	소득신고자	282 만명
		납부예외자	368 만명
	농촌 지역	소득신고자	97 만명
		납부예외자	96 만명
임의(계속)가입자			29 만명

- § 또한 50대를 전후에 직장에서 빠져나온 근로자는 소득이 부족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데, 돈을 아껴 보험료를 내면 기초연금이 삭감됨으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기 보다는 납부예외자로 빠져 나갈 유인을 만듦.
- § 결과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의 중심이 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져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액이 늘어나지 않아 노후소득불안이 가중되는 역작용을 불러일으킴

## 결론: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안의 본질과 청년세대

- §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의 본질은 노후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절대 늘리지 않겠다는 것임. 다시 말하면 **노후소득보장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신자유주의적인 복지관과 정확히 맥이 닿아있는 것임.
- § 또한 기초연금액을 소득연동(A값)이 아닌 물가연동으로 바꿀 경우 기초연금의 20만원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사실상 꺾데기만 존재하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즉 사실상 기초연금이 없어지고 국민연금만 존재하게 됨. 이는 2007년의 국민연금 삭감에 이은 제2의 연금삭감임.
- § 따라서 지금의 20대-30대 등 청년세대는 일정기간 동안 기초연금의 재원이 되는 세금을 부담하여 현재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됨. 그러나 정작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연령이 되면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 기초연금을 10만원만 받게 되고, ② 받게 되는 기초연금마저도 가치가 하락하여 사실상 꺾데기만 존재하는 기초연금을 받게 됨.
- § 즉,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청년세대에 대한 사실상의 연금삭감이기 때문에 청년세대의 노후를 극히 불안하게 만드는 것임.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장기가입 유인을 떨어트려 최후의 노후수단인 국민연금마저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청년들의 노후소득보장은 극히 불안해지게 될 것임.

# <부록> 국민연금액 계산 공식; 소득대체율의 이해

1.5 → 1.2

**1.8**  $(A+B)(1+0.05n)/12\text{개월}$

§ A값= 은퇴직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액

§ B값= 가입자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액

§ n= 20년을 초과 가입한 년도 (예, 25년이면 n=5) (실제는 개월수로 계산)

§ 상수: '88-'98년 2.4, 1999-2007년 1.8, 2008년 1.5 (매년 0.015씩 감소), 2028년 이후 1.2

## 연금액 계산의 실례

§ 자기의 소득이 200만원이고, 전체 가입자의 소득이 200만원인 가장 평균적인 소득을 올린 '홍길동' 이 40년을 가입했을 경우 (상수 1.2 가정)

$$1.2(200\text{만원}+200\text{만원})(1+0.05 \times 20) / 12\text{개월} = 1.2(400\text{만원})(1+1) / 12\text{개월} \\ = (480\text{만원} \times 2) / 12\text{개월} = \text{월 } 80\text{만원}$$

§ 홍길동은 사망시까지 8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며 80만원은 자기의 생애평균소득 200만원의 40%임. 즉 홍길동의 **소득대체율은 80만원/200만원 = 40%임**

- 가입기간이 40년이 아닌 20년이면 n 은 0이 되어 연금액은 40만원이 되며 소득대체율은 40만원 / 200만원 = 20%가 됨 (가입기간이 짧을 수록 소득대체율은 낮아짐)

## <부록> : 국민연금액 계산 공식; 소득대체율의 이해

각각 자기소득액이 다른 경우 연금액 계산법 (40년 가입, 상수 1.2)

- § 고소득층(갑) :  $A < B$ 인 경우 (가령  $A=200$ 만원,  $B=400$ 만원) ( 120 만원, 30%)
- § 중간소득층(을) :  $A=B$ 인 경우 (가령  $A=200$ 만원,  $B=200$ 만원) ( 80 만원, 40%)
- § 저소득층(병) :  $A > B$ 인 경우 (가령  $A=200$ 만원,  $B=100$ 만원) ( 60 만원, 60%)

- § 고소득층 '갑'의 연금액은 120만원으로 저소득층 '병'의 연금액 60만원보다 절대액에서 약 60만원이 많으나 소득대체율은 30%로서 '병'의 소득대체율 60%의 절반수준임.
- § 위의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한 것이고(명목소득대체율), 실제 가입기간은 평균 23년에 불과하여 가입기간을 따지면 **실질소득대체율**은 중간소득자 '을'의 경우 23%에 불과함.
- § 국민연금은 이처럼 저소득층의 소득대체율이 고소득층보다 높게 설계되어 있어 저소득층에 유리한 제도이며 저소득층을 배려한 제도임(이는 연금계산시 A값의 존재 때문임). 이런 방식은 미국의 국민연금제도(OASDI)와 매우 유사함. 그러나 독일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소득대체율이 모두 똑같음.
- § 그렇다면 저소득층을 배려한 국민연금제도는 좋은 제도일까? 아니면 나쁜 제도일까? 그리고 고소득층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손해를 보는 것일까?